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143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6. 7.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9. 22.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1. 1. 20. 접수 제1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6683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D는 원고에게 15,354,091원 및 그 중 8,185,85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피고의 어머니인 E가 2020. 9.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D 등 5명의 자녀가 있다.
- 2)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1. 1. 20. 접수 제136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채무초과 상태 등

피고와 D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할 당시 D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안군수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함철환

별지